



2020년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및 과제

곽관훈(전문대학교 법경찰학과)

Contents

-  1 개정 상법의 개요
-  2 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-  3 개정 상법과 주주총회 운용
-  4 맷음말

개정 상법의 개요



1. 상법 개정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

(1) 주요 개정 내용

-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 및 3%를 적용 요건 변경
-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변경
-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

(2) 개정 상법과 국민연금과의 관계

-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환경의 변화
 - . 스튜어드십 코드 +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5%를)
- 상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의 영향력 증대

2.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운용의 변화

- 배당기준일 제도의 변화
 - .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도 변화(2020년 상법 시행령 개정)
-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변화
 - . 전자투표 도입 시 출석주주 과반수로 의결(발행주식총수 25% 요건 적용 배제)



개정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1.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

(1) 주요내용

- 감사위원회 분리선임

회사규모	감사조직의 형태	개정 전	개정 후
비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 억원 미만 상장회사	감사	3%를 적용	동일
	감사위원회	없음	동일
자산총액 1천 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	상근감사	3%를 적용	동일
	감사위원회	1단계: 이사선임(3%를 X) 2단계: 이사 중 감사위원 선임(3%를 O)	1인이상: 이사선임(3%를 O) 1단계: 이사선임 이사(3%를 X) 2단계: 이사 중 감사위원 선임(3%를 O)
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	감사위원회	1단계: 이사선임(3%를 X) 2단계: 이사 중 감사위원 선임(3%를 O)	1인이상: 이사선임(3%를 O) 1단계: 이사선임 이사(3%를 X) 2단계: 이사 중 감사위원 선임(3%를 O)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- 감사위원 선임시 3%를 적용

구분	개정전	개정후
사회이사인 감사위원	모든 주주 개별 3%	현행과 동일
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	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: 합산 3% 기타주주: 제한없음	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: 합산 3% 기타 주주: 개별 3%

(2)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

가. 제도 도입의 취지

- 개정 전 감사위원 일괄선출방식의 경우 지배주주 영향력 차단에 한계
 -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선임하며, 이 때 3%를 적용
 - 지배주주의 영향력 차단을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

나.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문제점

(가) 과잉금지원칙 등의 위반

- 현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는 물론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등에 위배된다는 견해

(나) 회사법과의 정합성 문제

가) 이사의 본질적 기능과의 충돌문제

- 감사위원은 이사이며,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기능 훼손

- 이사는 회의 업무집행결정에 참여하는 존재이며,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주주는 전문성을 가진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

→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이며 주주의 의사가 자본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영역임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

나) 3%룰이 적용되어 선임된 감사위원(이사)의 책임문제

- 3%룰을 적용하여 선임된 감사위원인 이사의 경우, 일반적인 이사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의문

- 일반적으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부담
→ 3%룰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고 한다면, 이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 전체가 아닌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

다) 감사위원인 이사의 대표성 문제

- 3%룰 적용 및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

→ 적은 지분으로도 선임이 가능함에 따라 감사위원인 이사의 대표성 인정여부가 문제

라) 실무계의 우려

- 해외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에 진출하여 이사회 운용 방해 가능

- 경쟁기업 측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되는 경우 회사의 중요기밀 유출 가능

- 해외 투기자본의 단기적 이익실현 이용 가능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

2.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변화

(1) 의의

- 종전의 경우 상장회사는 주식분산을 고려하여 비상장회사보다 지분 요건을 낮추되, 상당기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정착되어 있는 주주에 한해 소수주주권 인정

→ 개정상법은 상장회사 요건과 비상장회사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소수주권 행사 인정한다는 점을 명문화

개정전	개정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상장회사 : 지분요건 + 보유기간요건(6개월)○ 비상장회사 : 지분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상장회사 요건과 비상장회사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하는 경우 행사 가능

(2) 문제점

- 상장회사 주식을 3% 이상 취득하면, 결제일 다음 날부터 주주제안권 등 주주권 행사 가능
→ 헤지펀드등에 의한 경영권 공격의 수단 확대 효과
-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용이화로 인한 영향력 확대(후술)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

3.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

(1) 의의

- 상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제기 가능

구분	개정상법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상법상 모자회사(발행주식총수의 50%초과 보유)
소 제기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상장회사 : 발행주식총수의 0.5%를 6개월 이상 보유○ 비상장회사 : 발행주식총수의 1% 보유

* 상장회사의 경우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능(소수주주권 선택적용)

(2) 문제점

-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경영진의 책임추궁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인정
- 단, 상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별개 법인격인 모자회사간 대표소송을 인정은,
→ 모자회사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상법의 기본관점과의 충돌 문제
→ 모회사 주주의 이익과 자회사 또는 자회사 주주의 이익의 충돌 문제 등 발생
- 해외 투기자본이 모회사의 소수지분을 확보한 후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자회사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 증가(실무계의 우려)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

4. 개정상법과 국민연금과의 관계

(1)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환경의 변화

가.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

-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의결권행사 원칙 정립

나.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
-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(5%룰) 개정
 - 5%룰로 인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

(가) 보유목적 변경

개정전	→	개정후
① 경영참여		① 경영참여
② 단순투자		② 일반투자 ③ 단순투자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

(나)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변경

- 종전에는 임원의 선임,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,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변경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해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
 - 임원의 선임,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
 -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변경
 -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
 - 회사의 배당의 결정 등
- 개정시행령에서는 주주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함
 - 임원의 선임등의 경우도 유지청구권행사와 같이 상법상 권리행사인 경우는 제외함
 - 회사의 기관과 관련한 정관변경의 경우도 기관투자자등이 투자대상 기업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
 - 회사의 자본금 변경도 상법상 권리(유지청구권) 행사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
 - 배당금의 결정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서 제외함

개정 상법과 기업지배구조



다. 개정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

- 상장회사의 경우 '비상장회사의 지분요건' 또는 '상장회사의 지분요건+보유요건'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소수주주권행사 가능

(2) 상법개정에 따른 영향

-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능
→ 상장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 확대 예상
-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는 (i)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, (ii)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, (iii)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도 부족한 문제가 있음
-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상장회사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



개정상법과 주주총회 운용의 변화



개정 상법과 주주총회 운용의 변화



1. 개정의 취지

- 쉐도우보팅 폐지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 성립의 어려움 지적
→ 주주참여 증대 방안 검토
(예) 전자투표 의무화,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연장, 주주총회 분산개최, 정족수 완화 등
- 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를 통한 주주참여 확대
→ 배당기준일 제도의 변화로 3월 이후 주총 개최 유도
→ 주주총회 소지통지시 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 추가(상법시행령 개정)
- 주주총회에서 감사(위원) 선임의 어려움 해소
→ 전자투표제도 도입시 결의요건 완화
→ 전자투표 원활화를 위한 본인확인 방법 개선(상법시행령 개정)

개정 상법과 주주총회 운용의 변화



2. 기준일제도의 개선

(1) 상법시행령 개정(2020.1.29개정, 2021.1.1시행)

-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'자본시장법'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'외감법' 제23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포함
-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
→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 결산기로부터 3월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, 주주총회가 3월 이후 개최 가능

(2) 상법 개정

- 배당기산일 관련 단서규정(제350조 제3항 및 준용규정) 삭제
→ '직전영업연도말일 = 배당기준일'이라는 규제를 폐지하여 배당기준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, 배당을 위한 주주총회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될 필요가 없어짐

(3) 검토

- 3월말 주주총회 집중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, 주주참여 유도라는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

개정 상법과 주주총회 운용의 변화



3.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

(1) 개정내용

- 감사(위원)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함

개정전	개정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발행주식총수 25% 찬성 & 출석주식수 과반수 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전자투표 도입시 :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○ 전자투표 미도입시 : 발행주식총수 25% 찬성 & 출석주식수 과반수 찬성

(2) 검토

- 본 개정으로 감사(위원) 선임시 정족수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고, 전자투표제도 도입에도 어느정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주주총회 정족수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(위원) 선임시 3%룰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함
- 또한, 아주 적은 찬성표로도 감사(위원)에 선임될 수 있다는 점에서,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



맺음말



1. 상법개정과 지배구조개선

- 감사위원인 이사는 이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, 3%룰을 적용하여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음
 - 감사위원에 대해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나, 감사위원은 이사라는 점에서 이사의 본질적 기능과 충돌문제, 이사로서의 책임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
- 회사법상 기업집단 수용에 관한 논의없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됨에 따라 혼란이 예상됨
 - 보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회사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실체인정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- 주주권행사의 용이화는 국민연금의 최근 주주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음
 - 회사법적 측면의 문제는 아니지만,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

2. 상법개정과 주주총회 운용의 변화

- 주주총회 운용과 관련한 일련의 개정은 주주의 참여부족으로 인한 문제임
- 개정상법등의 내용은 단기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으나,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은 되지 못함
-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사이버주주총회의 도입 등,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감사합니다!

